
전남대학교 대학원 수료후등록생 운영지침

2016. 3.

전남대학교 대학원

대학원 수료 후 등록생 운영 지침

제1조(목적) 전남대학교 학칙 제73조 제3항에 의하여 전남대학교 대학원(일반, 전문, 특수 대학원 포함)을 수료하고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등록하는 학생(이하 “수료후등록생”이라 한다)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) 이 대학원 석·박사학위 과정 수료생으로서 본인이 희망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.

제3조(제출서류 및 절차) ① 수료후등록생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정하는 기간 내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전산으로 신청한다.

② 학과(협동과정 포함) 및 주관 대학에서는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전산으로 확정하여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등록) 수료자 중 등록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정하는 기간 내에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5조(수납) 수료후등록 비용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8%로 한다.

제6조(신분) 수료후등록생은 학생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며, 학교의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제7조(증명 발급) 수료후등록생에 대하여는 수료후등록생증명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발급할 수 있다.

제8조(징계) 수료후등록생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
부 칙(2000. 8. 10.)

이 운영 지침은 2000. 2학기부터 실시한다.

부 칙(2009. 2. 01.)

이 운영 지침은 2009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2. 23.)

이 운영 지침은 2012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3. 8. 7.)

이 운영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5. 5. 26.)

이 지침은 2015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수료 후 등록생 증명서

성 명 :

생 년 월 일 :

학 위 과 정 :

학 과(전공) :

수 료 일 :

등 록 기 간 :

상기자는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 후 등록하여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자임을 증명함.

년 월 일

전 남 대 학 교 총 장